

연구노트

우리나라의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가입 여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박용하* · 최재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충남대학교**
(2009년 3월 17일 접수, 2009년 4월 23일 승인)

Feasibility Study on the Ratification of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CMS)' to Korea

Park, Yong-Ha* · Choi, Jaeyong**

Korea Environment Institute*, Dept. of Environment & Forest Resour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17 March 2009; accepted 23 April 2009)

Abstract

The impact of Korea's joining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CMS) was analyzed to examine its merits and faults as well as to discuss Korea's opportunities.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agenda and decisions of the Conferences of the Parties, the parties performance, and other committees meetings over the last decades indicated that the affiliation of Korea into the CMS could provide various advanta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First, Korea could upgrade its conservation activities regarding migratory species to the global aspects. Second, Korea could take initiatives for conservation of the migratory species in the Far East Asia. Third, Korea would have a better system in forecasting and problem-solving against the epidemic Avian Influenza through systematic cooperation with the CMS parties and other related international regimes. Finally, Korea will be in a better position to generate statistical data and to develop techniques to reduce the by-catches of the sharks and whales. Korea has already provided a fair and protective institutions for most of the migratory endangered species listed under Appendix I and II of the CMS. This implies that Korea may not require additional major changes to the basic acts and/or legislation. Joining the CMS may negatively impact on the fisheries and related businesses related to whales and sharks around the Ulsan and Pohang provinces. However, the obligation to protect whales and sharks demanded by the CMS is regarded as an acceptable article in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policies and scientific aspects. Nevertheless, if the

joining the CMS should generate irreversible hardship for local people's livelihood and cultural aspects, Korea may ask for reservations on particular activities. Overall, we suggest that by joining the CMS, Korea could see various advantages and promotion in national policy.

Keywords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CMS), migratory endangered species, whale, shark, Korea

1. 서론

「이동성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은 1983년에 발표된 자연환경보전에 관련된 오래된 환경협약중의 하나이다. 동 협약은 국제 환경논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serva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또는 '습지보호협약'으로도 불림) 등과 함께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협약이다. 2008년 4월 현재 협약의 당사국은 107개국이다(UNEP/CMS, 2008a).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정부차원에서 CMS 가입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의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협약의 가입을 두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첫째, 우리의 인근인 중국과 일본이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여 이 지역의 연대적 유대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 둘째, 동 협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및 상어 등에 대한 해양생물종의 이용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당시 해양수산부의 의견은 받아들여져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다.

최근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 또는 해양오염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국가간 이동

하는 鳥類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국가지정생물학연구정보센터, 2003). 더불어 동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CMS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생물자원보전 및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생물자원보전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본 협약의 가입에 대한 요청이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협약의 경우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여러 의무사항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CMS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CMS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동 협약의 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영향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MS의 목적, 체계 및 주요 논의 사항 등 협약의 주요 사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가입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동 협약이 내용 및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협약의 가입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II. 협약의 개요 및 가입시 의무사항

1. 채택배경 및 발전과정

이동성 생물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1972년 UN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이동성 생물종의 보전에 대한 국제적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본 논의에 기안하여 1974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IUCN의 협력으로 CMS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후 다수 국가들과 협상을 거쳐 1979년에 독일 본(Bonn)에서 전문과

20개조의 본문 그리고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동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83년 11월에 발효되었다(O'Sullivan, 2003; UNEP/CMS, 2004). 동 협약은 현재(2008년 2월)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10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 미가입 국가들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다(UNEP/CMS, 2008a).

CMS는 이동성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조치와 국제적 협력에 관한 규범적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인 동시에 특정 생태계의 보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지구적 차원의 협약이다. CMS는 생물의 특성상 보전을 위하여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의 근본적인 보전을 위한 서식지의 보호와 이동경로상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CMS는 CBD의 포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틀 아래에서 이동성 생물종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CBD에서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CITES가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생물종¹⁾의 보전활동과 CITES에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이동성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 및 살상행위와 국내거래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다. 또한 람사르협약에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동성 해양 동물 및 이들의 서식지 보호, 이동성 생물종의 이동경로 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UNEP/CMS, 2007a)(그림 1).

2. 협약의 주요 목적, 체계, 주요 내용 및 논의 사항

CMS의 목적은 이동성 야생동물들과 이들의 서식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구적 규모의 기반 제공이다. 동 협약은 이동성 야생동물이 서식하거나 통과하는 국가들을 통합시키며, 이주경로의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보전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Guruswamy, 2003).

CMS의 전문은 서문과 20개의 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CMS 전문의 제1조-제2조는 협약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제3조-제5조는 보전대상종의 구분(부속서 I, II) 및 보전방안, 제6조-제9조는 동 협약의 구성 및 구성체의 역할이다(UNEP/CMS, 2007a). 동 협약은 당사국(Parties),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과학협의회(Scientific Council)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0조-제20조는 국제규약의 일반적 관례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I은 멸종위기의 이동성 종으로 114종과 3아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 I에는 국제 협정을 통한 국제협력으로부터 중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이동성 종과 비호의적인 보전상태의 종, 보전 및 관리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이동성 종으로 13목, 143종, 27아종이 개재되어 있다(UNEP/CMS, 2007c). CMS는 골격협약 또는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서 이동성 생물을 보전을 위하여 종단위의 협정(Agreement) 또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보전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7개의 협정과 10개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다(UNEP/CMS, 2007b).

CMS에서는 이들 생물에 관한 보전, 지구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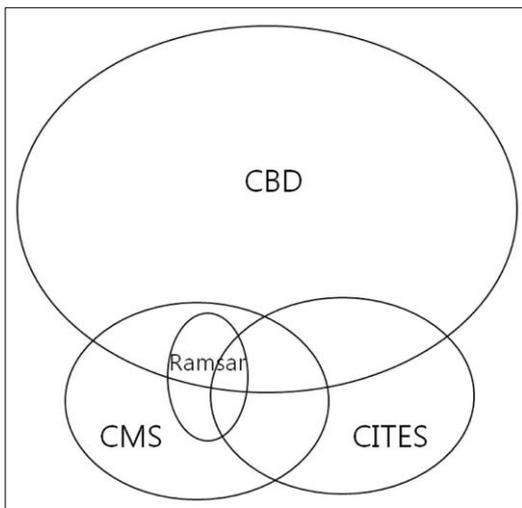


그림 1. 생물다양성 국제협약간의 관계도

1) 2008년 4월 현재 CMS 대상생물종 중 조류, 상어류, 바다 거북 등의 이동성 생물종 71종이 CITES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역적 맞춤형 해결방안 제공, 보전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협력 이행 등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985년 개최된 제1차 당사국회의 이후 2005년 11월까지 총 8회의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당사국회의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소형 고래류(Small Cetacean)의 보전방안, 이동성 종의 혼획(by-catch)문제, 조류독감, 바다거북 및 이동성 상어류의 보전방안, 부속서 I, II 종의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이동성 종의 영향 및 적응방안,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여부, 기름 오염과 이동성 종, 풍력발전과 이동성 종, 이동성 조류의 감전사, CMS 전략계획(Strategic Plan), 이동성 종의 지속가능한 이용, 2010 생물다양성 목표(Biodiversity Target)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다른 협약들과의 협력 방안 등이 있다. 이외에 동 협약의 과학협의회와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과학적·행정적 검토 및 지원방안이 논의된다(UNEP/CMS, 1985-2005).

초기 1-4차 당사국회의에서는 각국의 입장이 강하게 개진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주장이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제5차 당사국회의 이후 국가간 이해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 등장하면서 각국의 주장과 요구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철새 등에 대한 보전문제의 표출, 부속서 등재 생물종에 대한 협력조치(Concerted Action), 미래 발전 전략(Strategic Plan 2000-2005) 등의 논의와 바다거북에 대한 양해각서(Marine Turtle MoU) 체결,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와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제도의 도입, 풍력발전이 이동성 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CMS 전략계획 2006-2011 마련, 이동성생물종목록(MSI, Migratory Species Index) 제작, CMS 정보관리 시스템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동성 생물에 미치는 영향, 조류독감에 관련된 이동성 조류들의 보전 등의 의제에 대해 당사국간의 입장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UNEP/CMS, 1985-2005; UNEP/CMS,

2004; UNEP/CMS, 2007d).

3. 가입 시 의무사항

CMS에 가입하게 되면,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당사국들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의무사항은 부속서 I, II 등재 생물에 대한 의무사항, 국가보고서의 제출, 분담금 지불이 있다.

당사국은 기본적으로 부속서 I, II 등재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동성 생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부속서 I에 속한 생물의 즉각 보호, 부속서 II에 등재된 생물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준수를 이행한다. 이밖에 해당 생물에 관한 보전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이주 및 활동 방해요소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해당 생물종의 멸종을 야기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제한 및 제거하며 부속서 I의 생물종의 경우 포획을 금지하며, 해당 생물에 대한 정보교환 및 홍보를 이행한다. 본 협약은 부속서 등재 생물에 대하여 부속서 I 생물의 포획금지 이외에는 특별한 규제가 강요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CMS는 보전을 위한 규제에 초점을 둔 협약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식확대 및 능력배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생계보장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입시 관련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급격한 제제가 가해지기보다 협약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약 가입이 지역주민의 생계 및 문화적 차원에서 무리를 가한다고 사료되는 경우, 가입 시 관련 부분에 유보(Reservations)를 둘 수 있는 협약 제14조가 존재한다(UNEP/CMS, 2008b).

CMS 부속서 등재 생물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사항은 당사국회의에 제출하는 당사국의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를 통하여 점검되며, 각국의 이행상황은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된다. 당사국은 협약 조항들의 이행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당사국회의의 6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국가보고서

는 사무국에서 수집, 통합, 정리하여 당사국들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CMS의 활동들이나 사안들을 결정하는데 참고한다. 2008년에 개최될 제9차 당사국회의부터는 당사국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른 생물다양성 협정들과의 손쉬운 조화를 위하여 Biodiversity Liaison Group 틀에 맞추며, UNEP-WCMC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와 협의 하에 만들어진 형식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국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현재 국가보고서는 CMS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부속서 I, II 생물종, 국가적·지역적 우선순위, 보호지역, 위성원격측정 정책, 홍보활동, 지구적·국가적 CMS 활동, 자원(기술 또는 재원)의 이동, 당사국회의 결의안(Resolution), 권고안(Recommendation)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CMS 분담금은 UN에서 책정한 각국의 규모(Scale)에 기준하여 각 당사국에 책정된다. 제8차 당사국회의 시 책정된 2006-2008년 총 예산은 \$8,666,598(USD)로 이 중 당사국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신탁기금(Trust Fund)은 \$7,504,098(USD)이다(UNEP/CMS, 2005). 우리나라의 분담금을 CMS 2006-2008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2006-2008년 총합은 \$295,416(USD)이다.²⁾

III. 협약 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1. 가입시 고려해야 할 주요 야생생물종

우리나라의 CMS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CMS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CMS에 다루고 있는 부속서 I, II의 생물종에 대한 가입국의 의무사항 등의 검토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이 CMS 부속서 I, II 등재 생물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부문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서의 생물종은 총 92종이다(표 1). 부속서 I에 31종, 부속서 II에

표 1. CMS 부속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종

	계	조 류	해양생물*
계	92	71	21
부속서 I	31	18	13
부속서 II	73	57	16
공 통	12	4	8

* 본고에서 해양생물종은 해양포유류, 해양파충류 그리고 해양어류를 통칭함.

73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12종은 부속서 I과 II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UNEP/CMS, 2007e).

2. 가입에 따른 장점 및 기회요인과 이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CMS 가입은 다양한 장점 및 기회요인들을 제공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동성 생물종을 국가적 및 지구적 차원에서 보전할 수 있다. 동 협약의 가입은 이동성 생물에 대한 정보를 지구적 차원에서 손쉽게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하며, 이동성 생물종에 대한 국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이동성 생물종에 대한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동성 생물종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지역주민 생계유지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동성 생물종 보전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다. 더불어 CMS에서 다루고 있는 고래류와 상어류 등의 보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생태관광효과와 제고 등 부수적인 기회요인도 고려할 수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지역에서 CMS를 비롯하여 이동성 생물종의 보전에 관련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MS의 가입은 CITES가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생물종의 국제적 보전활동과 CITES에서 규제되지 않고 있는

2) 분담금은 우리나라가 각 연도별로 1월1일에 가입하는 가치에 계산되었다. 연도 중반에 가입이 진행되는 경우, 그 시점에 비례하여 분담금이 책정된다. 이 금액은 2006-2008년 CMS 예산에 기초하여 2005년의 UN Scale of Assessment를 이용한 것이다(UNEP/CMS, 2007f).

이동성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 및 살상행위와 국내 거래, 그리고 람사르협약에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동성 해양 동물 및 이들의 서식지 보호, 이동성 생물종의 이동경로 보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관련 국제 활동에 동참케 한다. 또한 CMS에 당사국에 참여함으로써 관련된 국제 정보를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당사국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동성 생물종의 보전에 관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협약 가입은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공조체계에 편입을 가능하게 하여 조류독감에 관련한 예찰, 연구 및 대처방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CMS는 이동성 철새에 의한 조류독감의 매개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제8차 당사국회의에서 언급한 이래로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그 결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오고 있다(CRE, 2007). 우리나라의 CMS 가입은 이러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에 국제적인 공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CMS는 주변국과 발생할 수 있는 조류독감 관련 국제적 분규에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CMS는 UNEP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조류독감의 발생, 전염과 확산 등 주요한 기후생물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예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AIWEB(Avian Influenza, Wildlife and the Environment Web)을 운영중이다(AIWEB, 2007; NABU, 2006). 따라서 CMS의 가입은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적 예찰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적 기반에서 조류독감을 파악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능력배양의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넷째, 협약가입은 연근해 어업에서 상어류 혼획에 대한 통계자료 생성 및 혼획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국제적인 지역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도 부합한다(이광남, 2006).

3.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과 이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가 CMS에 가입하게 되면, 당사국으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CMS 부속서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거나 또는 우리나라를 이동경로로 하고 있는 조류종과 고래류를 포함하는 해양 생물종에 대해 당사국으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MS 부속서 I에 등재된 조류는 18종이다. 이들 조류종의 분포지역으로 낙동강에 서식하는 조류가 13종이며, 그 다음으로는 서해안과 한강을 포함하여 포함해서 총 12종의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DMZ 접경지역,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이들 조류종이 일부 서식하고 있다. 이들 조류종은 대부분이 천연기념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 II급, CITES 보호종, IUCN 멸종 및 취약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CMS 부속서 I 등재 조류 18종의 경우, CITES 8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3종, 천연기념물 9종, IUCN 멸종 및 취약종 18종 등에 적용되어 여러 법률에 중복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 2007; 송순창, 2005; 진명호, 2007; UNEP-WCMC, 2008).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MS 부속서 II에 등재된 조류는 57종이다. 이들 조류종중에서 22종은 DMZ 접경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강에 34종, 서해안에 34종, 동해안에 34종, 낙동강에 40종, 남해안에 30종 그리고 제주도에 9종이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이들 생물종들은 CITES 4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5종, 천연기념물 7종, IUCN 취약 및 경미한 위기종 58종 등에 중복적으로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밖

표 2. 우리나라의 이동성 야생동물 보전에 관한 협약 가입에 따른 이동성해양생물 관련 요인들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이동성 생물의 보전활동 - 협약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확보 - 이동성 생물에 관한 정보 획득 가능 및 국내외 잘못된 정보의 수정 • 동아시아지역에서 CMS 관련 주도적 정책추진 - 동아시아지역에서 처음 가입으로 본 협약에 대하여 지역 내에서 이동성 생물종의 보전에 관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국가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체계 미흡 • 이동성생물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혼획 저감을 비롯한 협약의 의무사안 충족을 위한 정책 및 법적도의 추가적인 변화 요구
↑	↓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생물다양성보전과 관련된 국제협약 가입 및 적극적인 활동은 환경보전에 대한 환경부 및 관련부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임 •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 제고 •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 - 국제협약 가입 및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의 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음 • 이동성생물종에 관한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근해 어업에서 상어류 혼획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부족 및 혼획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 이동성생물종의 보전을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음 • 이동성생물종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지역주민 생계유지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기회 •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시행)에 상당부분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류, 상어류의 혼획과 관련하여 연근해 어업에 대한 영향 - 연근해 어업에서 바다새와 바다거북의 경우 거의 영향이 없을 것임 - 원양어업에서 바다새 및 상어류, 바다거북의 경우 국제 기준의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임 • 고래류의 경우 상업포경 재개를 위해 RMS(감시·감독제도)완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 일부 어업인들이 동조

에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 받고 있다(국가지정생물학연구정보센터, 2007; 박용하 등, 2007; 송순창, 2005; 진명호, 2007; UNEP-WCMC, 2008).

CMS 부속서 I, II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류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CMS 가입에 따른 조류종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즉, 우리나라가 CMS 가입 시 부속서 I, II 등재 조류종의 경우 추가적인 법률적, 제도적인 보호정책 없이도 현재의 제도 하에서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CMS의 가입은 고래류와 상어류³⁾의 연계되어 있는 울산 및 포항 등의 관련업체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CMS 가입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연근해어업의 경우 고래류는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1986년 상업적 포획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전면금지하고 있다(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1991.3.28; 수산청 고시 제85-7호). 다만 정치망 및 유자망 어업 등에서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류는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경에 신고를 하고 판매되고 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109호).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근해에서 혼획, 좌초되고 있는 고래수는 1998년 81마리에서 2005년 550마리, 2006년 588마리이다. 이러한 급격한 혼획 및 좌초된 고래수의 증가는 대부분이 참돌고래의 혼획 및 좌초에 기인하고 있다. 참돌고래의 경우 1999년 25마리에서 2001년 66마

3) CMS 부속서 I, II 등재 해양생물종 중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종은 고래류 11종, 상어류 5종, 바다거북 5종으로 총 21종이다. 고래류의 경우 11종 모두가 CITES에 해당되며, 상어류는 5종중 4종이 CITES에 등재되어 있다. 바다거북은 5종중 2종이 CITES에 등재되어 있다(박용하 등, 2007).

리, 2003년 113마리, 2006년에는 354마리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식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밍크고래의 혼획은 1998년 45마리, 2005년 107마리, 2006년 83마리이다(고래연구소, 2007). 밍크고래의 입찰가격은 크기에 따라 다르나, 한마리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이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밍크고래의 시장가치는 2006년 가격 기준으로 연간 25억원 정도이다. 그 외 다른 종류의 고래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크지 않다. 그리고 불법 포획되고 있는 고래류를 개략적으로 감안하더라도 국내 고래류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수십억원 정도일 것이다. 즉, 고래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고래류의 혼획 및 부수어획 등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국제적으로 상업적인 포경의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일부 어업인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향후 IWC의 포획쿼터제의 실시로 상업포경이 재개될 경우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위협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CMS 당사국의 다수가 동시에 IWC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CMS 가입국 중에는 IWC 가입국이 공존하기 때문에 CMS 내부에서도 고래와 관련된 사안들을 IWC와 입장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Prideaux, 2003). IWC에서 상업적인 포경의 재개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CMS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IWC에서 고래포경의 포획쿼터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IWC와 관련된 국제협약인 CMS에서의 논의를 고려해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CMS 가입은 고래의 포획쿼터제 실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중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CMS에 가입하고 국제적으로 상업적 포획이 재개될 경우, 울산 및 포항 지역의 포경 관련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CMS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면, 우

리나라의 CMS 가입은 IWC의 상업적인 포경의 재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상어류의 경우 원양 및 연근해어업에서 주 포획 대상은 아니다. 원양어업에서 2001-2005년간 상어류의 부수어획량은 태평양 해역에서 총 생산량의 2.3%(2001년 1,572톤, 2002년 1,884톤, 2003년 909톤, 2004년 586톤, 2005년 811톤), 인도양에서는 1.5%(2003년 96톤, 2004년 74톤, 2005년 105톤)를 점하고 있으며, 대서양에서는 거의 없다. 이러한 원양어업에서의 상어류 부수어획량은 우리나라의 CMS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서 상어류를 어획하는 어구어법은 근해안강망, 연안연승, 대형트롤,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등 30개 이상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2001년-2005년간 매년 100톤 이상의 상어류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혼획되고 있다(이광남, 2006; 한국원양어업협회, 2006).

이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CMS 부속서에 지정되어 있는 상어류의 연근해 포획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경제성 추정이 어려우나⁴⁾, 연근해 상어류 혼획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상어류의 혼획 통계자료 확보 및 혼획 저감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구어법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및 지구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 조치를 위한 통계자료 및 관

4) 식용인 상어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두당 10-50만원에 거래된다. CMS 부속서에 지정되어 있는 돌묵상어와 고래상어는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거래되지 않고 표본용으로 거래된다. 표본용 상어의 경우 그 가격은 그 크기 및 상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00-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2007년 9월 4일 진도해역에서 정지망에 걸린 길이 4m, 1.5톤 가량의 고래상어의 경우 120만원에 거래되었다(연합뉴스, 2007년 9월 5일자). 이광남(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CMS 부속서에 지정되어 있는 상어류의 포획량이 매우 미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CMS 지정 상어류에 대한 정확한 경제성 추정이 어려우나, 식용 및 표본형 사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들 상어류의 경제적 가치는 고래류의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가 CMS 가입시 동 협약의 부속서 I, II 해양생물종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경제·사회적 동향

구분	해양생물	세 부 내 역
연근해	고래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나, 국제적으로 상업포경을 재개시 울산 및 포항 지역의 관련 업체들에게 영향
	원양	주포획대상이 아니고 부수어획도 거의 없어 영향은 미미
	상어류	주어획대상 어종은 아니지만 어구어법상 부수어획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상존
	바다거북	국민 정서상 포획되더라도 재 방류하며, 부수어획 거의 없어 영향 없음
원양	고래류	상업적 어업 없음
	바다새	국제수산기구 보호조치에 따른 장비개발 등 보호조치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는 주요수산국으로서
	상어류	국제규범에 따라야하므로 CMS 가입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임
	바다거북	

련 장비개발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원양조업국에 해당이 되고, CMS 가입과 관계 없이 이러한 조치들은 이루어져야 한다(이광남, 2006). 이러한 국제적 이 의견을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CMS에 가입여부를 떠나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CMS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에게 이행해야 할 위협요인이라 할 수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될 기회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바다거북의 경우 주 포획대상이 아니며 혼획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바다거북을 장수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국민정서상 포획되더라도 재방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다거북 혼획을 최소화시키는 권고안에 따라 원양다랑어 연승어업에서 환영낚시 등을 이용하여 바다거북을 보고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향이 거의 없다(이광남, 2006).

원양어업에서는 고래류의 경우 상업적 어업이 없고, 상어류 및 바다거북의 경우는 국제협약 및 지역수산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호조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양어업에서 고래류는 상업적 어업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다만, 상어류 및 바다거북의 경우는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기구에서 보호조치에 대한 기술적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장비 개발에 대한 일부 경제적 부담이 우려된다(이광남, 2006). 그러나 이러한 보호조치를 위한 관련 장비개발에 대한 부담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원양조업국에 해당이 되고, CMS 가입과 무관하게 이러한 조치들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수산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CMS 가입으로 인한 원양어업과 관련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시행)을 통하여 해양생태계를 종합적,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원양어업의 경우, 지역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그간의 정부 정책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가 CMS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기회가 있다. 반면에 CMS 부속서 I, II에 개재되어 있는 해양생물종에 대한 현황 등을 토대로 할 때, CMS에 가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요인도 우리가 협약 국가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운용하는 등의 대응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IV. 결 론

CMS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의 경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제한적이며 가시적이지 못하여 그동안 다른 관련 협약에 비하여 주목

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미가입 원인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하지만 생물종 및 자연환경자산과 관련된 협약의 경우,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환경 협약의 경우 여러 협약들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지구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한 협약의 미가입은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어느 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CMS를 바라다보는 국제적인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현재 CMS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과 중국은 협정서 또는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한 바 있다(UNEP/CMS, 2007d; UNEP/CMS, 2008c). 그리고 이들 국가는 당사국 회의에 참관자(observer)로 참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CMS 미가입에 대한 이들 국가의 명확한 입장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미 IWC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CMS의 가입은 추가적인 규제를 유발하게 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래를 다수 국민들이 음식문화로 즐기고 있는 일본의 경우, CMS의 가입은 일본 국내에서의 큰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CMS에 가입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CMS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CMS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CMS가입에 따른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CMS에 가입에 의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CMS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부문의 마지막 국제환경협약으로, CMS의 가입은 생물다양성협약, CITES, 람사르협약에서의 활동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확대시키고 기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이며 환경보전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MS에 가입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의 생태계가 건전성을 유지함에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지구적으로 주목 받는 소수의 철새 자연서식지의 일부가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높은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전적 가치가 높은 것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CMS의 가입문제는 단순히 각 협약에 따른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위상,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전략적 운용이라는 측면과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CMS의 가입과 협약에서의 활발한 활동은 CMS에 가입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주변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동성 야생동물종에 대한 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제고시키고, 향후 발생하는 조류독감 관련 국제적 분규에 보다 개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MS 가입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과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정책조치는 많지 않을 것이다. CMS에서 요구되는 의무사항 역시 국내 현 정책적 그리고 학술적인 상황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약 협약 가입이 지역주민의 생계 및 문화적인 차원에서 무리를 가한다고 사료되는 경우, 가입시 관련 부분에 유보(reservation)를 둘 수 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어류의 포획을 위한 어구어법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및 지구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협약 가입은 이러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유도해 문제 해결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CMS 가입시 우리나라의 정책에 미치는 추가적인 사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가입한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들 및 국가 정책차원에서 본 협약에서 요구하는 보전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다. 이밖에 다른 국제협약들에 비하여 저렴한 분담금은 협약 가입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담이 미미함을 나타낸다. 향후 협약의 확대에 따라 부속서의 생물종 추가 등의 의무사항 증가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위험요소는 어떠한 협약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CMS의 외부관찰자(observer)로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보다는 협약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국익보호 차원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환경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연구의 시작부터 지원해 주신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안용락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고래연구소, 2007, 우리나라 혼획 및 좌초 고래현황, 고래연구소 내부자료.

국가지정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전국조류분포지도”. <http://bric.postech.ac.kr/species/bird/map/index.html>. (2007)

국가지정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현황 - 환경부”. http://bric.postech.ac.kr/species/wide_ap.html. (2007).

국가지정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2003, “Hot Issue Avian Influenza” http://bric.postech.ac.kr/trend/issue/2003/avi_influ.html (2007)

박용하, 노태호, 전동준, 김정희, 마지현, 노승혜, 2007,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가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부.

송순창, 2005, 「세밀화로 보는 한반도 조류도감」 김영사.

이광남, 2006, 바다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IPOA) 세부실천방안 연구,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진명호, 2007, “습지 및 철새보호 정책현황” 「2007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원양어업협회, 2006, 「원양어업통계연보(제28집)」.

환경부, 2001, 「한국의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국, 영문 종 정보 기록 연구」, IUCN 한국위원회.

환경부, 2005,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화보집」, 환경부 자연자원과.

AIWEB, “Avian Influenza, Wildlife and the Environment Web” <http://www.aiweb.info> (2007).

CRE, 2007, “Foreign Countries’ Response to the Avian Influenza (H5N1) Virus: Current Status. CRE Report for Congress” <http://www.nationalaglawcenter.org/assets/crs/RL33871.pdf> (2007).

Guruswamy, L., 2003,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omson/West. p168-171.

NABU, 2006, *Caution: Electrocutation!-Suggested practices for bird protection on power lines*.

O’Sullivan, J., 2003, *Agreeing to save migratory species: the Bonn Convention*. World Birdwatch.

Prideaux, M., 2003, *Conserving Cetaceans: The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and its relevant Agreements for Cetaceans Conservation*, WDCS. Munich.

UNEP/CMS, 1985,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the Parties (COP1)”, http://www.cms.int/bodies/COP/cop1/cop1_documents_overview.htm. (2007)

UNEP/CMS, 1988, “Second Meeting of the

- Conference the Parties (COP2)", http://www.cms.int/bodies/COP/cop2/cop2_documents_overview.htm. (2007).
- UNEP/CMS, 1991, "Third Meeting of the Conference the Parties (COP3)", http://www.cms.int/bodies/COP/cop3/cop3_documents_overview.htm. (2007).
- UNEP/CMS, 1994, "Fourth Meeting of the Conference the Parties (COP4)", http://www.cms.int/bodies/COP/cop4/cop4_documents_overview.htm. (2007).
- UNEP/CMS, 1997, "Fifth Meeting of the Conference the Parties (COP5)", http://www.cms.int/bodies/COP/cop5/cop5_documents_overview.htm. (2007).
- UNEP/CMS, 1999, *Sixth Meeting of the Conference the Parties (COP6)*.
- UNEP/CMS, 2002, "Sev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the Parties (COP7)", http://www.cms.int/bodies/COP/cop7/COP7_documents_overview.htm. (2007).
- UNEP/CMS, 2004, 25 Years of Journey - A special report to mark the Silver Anniversary of the Bonn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1979-2004).
- UNEP/CMS, 2005, "Eighth Meeting of the Conference the Parties (COP8)", http://www.cms.int/bodies/COP/cop8/COP8_documents_overview.htm. (2007).
- UNEP/CMS, 2007a, "C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ttp://www.unep-wcmc.org/isdb/cms/Taxonomy/index.cfm> (2007).
- UNEP/CMS, 2007b, "Agreement Summary Sheet", http://www.cms.int/pdf/en/summary_sheets/AmgtSumSheet_engl.pdf (2007).
- UNEP/CMS, 2007c, "Appendices I & II", http://www.cms.int/documents/appendix/Appendices_COP8_E.pdf (2007).
- UNEP/CMS, 2007d, "Application of CMS to Overseas Territories/Autonomous Regions", http://www.cms.int/pdf/territories_reservations.pdf (2007).
- UNEP/CMS, 2007e, "Range State List by Appendices Listed Species", http://www.cms.int/pdf/en/CMS_Range_States_by_Species.pdf (2007).
- UNEP/CMS, 2007f, Scale of Contributions to the UNEP/CMS Trust Fund for 2006-2008.
- UNEP/CMS, 2008a, "List of CMS Parties", http://www.cms.int/about/Partylist_eng.pdf (2008).
- UNEP/CMS, 2008b, "Convention text", http://www.cms.int/pdf/convtxt/cms_convtxt_english.pdf (2008).
- UNEP/CMS, 2008c, "Countries Participating in CMS Agreements/MoU's that are not yet Parties to CMS", http://www.cms.int/about/Nonparties_participating_in_CMS_Agreements_MoU.pdf (2008).
- UNEP/CMS, 1985-2005, "Proceedings of the 1st to 8th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http://www.cms.int> (2008).
- UNEP-WCMC, "UNEP-WCMC Species Database", www.unep-wcmc.org (2007).